

우선심사사무취급규정 개정 안내

1. 개정이유

우선심사신청 출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공해방지분야에 대한 우선심사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우선심사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판단기준

및 입증서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제3조제3호 및 제5조제3항)

나. 심사국별 개최하는 우선심사심의협의회의 운용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선심사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심사조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제6조제2항)

다. 기타 자구조정 등을 행함(제3조제2호,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2조)

특허청고시 제1999-3호

특허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선심사사무취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년 4월 17일

우선심사사무취급규정중 개정령

우선심사사무취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출원중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위산업물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을 말한다.

나.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수출실적, 신용장 내도 및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의 요청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하는 서류가 모두 구비된 출원을 말한다.

3.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공해방지 및 제거가 주목적인 발명·고안 또는 의장에 관한 출원중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 방지방법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 (1)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 방지시설,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
-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
-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 (4)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및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 (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을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 (6)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유처리시설
-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나. 신기술을 조기에 권리와 및 산업화하지 않을 경우 그 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거나 국내출원의 신속한 글로벌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심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출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출원
- (2)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에 관한 출원
- (3) 출원인이 출원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출원
- (4)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외국 특허청에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제5조제2항제2호중 “다” 목을 “나” 목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선심사 신청설명서 : 다음 각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가. 출원의 요지
 - 나. 우선심사 신청이유
2. 제3조제3호나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다음의 1의 서류
 - 가. 중소기업청장 명의의 벤처기업확인서
 - 나. 중소기업청장 명의의 품질인증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NT마크 및 E마크의 취득에 관한 기술에 한함)
 - 다. 출원인이 자신의 출원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라. 출원인이 자신의 국내출원을 기초로 외국에 우선권주장 출원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출원시 우선심사 신청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2항중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이 속하는 심사국의 주무심사담당관”을 “심사조정과장,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이 속하는 심사국의 주무심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중 “제3조제2호”를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선심사사무취급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 3 조 (우선심사의 대상)(본문생략)</p> <p>1. (생략)</p> <p>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출원중 공개된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내용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나.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내용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의 직무에 관한 출원</p> <p style="margin-left: 20px;">나.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공해방지 및 제거가 주목적인 발명·고안 또는 의장에 관한 출원중 다음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 방지방법에 관한 출원을 말한다.</p> <p style="margin-left: 40px;">(1)~(7)(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설)</p>	<p>제 3 조 (우선심사의 대상)(현행과 동일)</p> <p>1. (현행과 동일)</p> <p>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출원중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현행과 내용 동일)</p> <p style="margin-left: 20px;">나.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현행 다목과 내용 동일)</p> <p style="margin-left: 20px;">다. (현행 라목과 동일)</p> <p>3.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가. 공해방지 및 제거가 주목적인 발명·고안 또는 의장에 관한 출원중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 방지방법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할 것</p> <p style="margin-left: 40px;">(1)~(7)(현행과 동일)</p> <p style="margin-left: 20px;">나. 신기술을 조기에 권리화 및 산업화하지 않을 경우 그 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거나 국내출원의 신속한 글로벌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심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출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할 것</p> <p style="margin-left: 40px;">(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출원</p> <p style="margin-left: 40px;">(2)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에 관한 출원</p> <p style="margin-left: 40px;">(3) 출원인이 출원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출원</p> <p style="margin-left: 40px;">(4)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외국특허청에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p>
<p>제 5 조 (첨부서류) ① (생략)</p> <p>1.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가. (생략)</p> <p style="margin-left: 40px;">(1)~(2)(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나. ~다.(생략)</p> <p>2. (생략)</p>	<p>제 5 조 (첨부서류) ① (현행과 동일)</p> <p>1. (현행과 동일)</p> <p style="margin-left: 20px;">가. (현행과 동일)</p> <p style="margin-left: 40px;">(1)~(2)(현행과 동일)</p> <p style="margin-left: 20px;">나. ~다.(현행과 동일)</p> <p>2. (현행과 동일)</p>



현 행	개 정 (안)
<p>② (생략)</p> <p>1. (생략)</p> <p>가.~다.(생략)</p> <p>2. 수출실적, 신용장 내도 및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의 요청 등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제3조제2호 “다”목의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의 경우에 한함)</p> <p>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 (현행과 동일)</p> <p>1. (현행과 동일)</p> <p>가.~다.(현행과 동일)</p> <p>2. ----- ----- ----- “나” 목 ----- -----</p> <p>3. (현행과 동일)</p> <p>③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1. 우선심사 신청설명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p> <p>가. 출원의 요지</p> <p>나. 우선심사 신청이유</p> <p>2. 제3조제3호나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다음의 1의 서류</p> <p>가. 중소기업청장 명의의 벤처기업확인서</p> <p>나. 중소기업청장 명의의 품질인증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NT 마크 및 EM마크의 취득에 관한 기술에 한함)</p> <p>다. 출원인이 자신의 출원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p> <p>라. 출원인이 자신의 국내출원을 기초로 외국에 우선권주장출원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p> <p>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출원시 우선심사 신청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6 조 (우선심사심의협의회의의 구성) ①(생략)</p> <p>② 우선심사 심의협의회의는 각 해당심사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이 속하는 심사국의 주무심사담당관, 해당 심사담당관(주무심사담당관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 법무담당관 및 해당분야의 심판관으로 구성하며, 해당심사국 주무심사담당관이 간사가 된다.</p>	<p>제 6 조 (우선심사심의협의회의의 구성) ①(현행동일)</p> <p>② ----- ----- 심사조정과장,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이 속하는 심사국의 주무심사담당관, ----- ----- -----</p>
<p>제 12 조 (의견문의) 해당 심사국장은 당해 출원이 제3조제2호의 우선심사대상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계기관에 의견문의를 할 수 있다.</p>	<p>제 12 조 (의견문의)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 ----- -----</p>